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91
----------	------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한기영 의원(찬성의원 11명)
- 나. 발 의 일 : 2019년 10월 16일
- 다. 회 부 일 : 2019년 10월 22일
- 라. 상 정 일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기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재능기부활동으로써, 현행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을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자격요건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로 완화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 중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개정함(안 제4조 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세무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2019. 10. 25. ~ 11. 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안 제4조 제1항은 마을세무사 자격요건을 현행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에서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로 개정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u>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u>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 등) ① ----- ----- 「 <u>세무사법</u> 」에 따라 <u>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2015년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무 상담,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 기관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331명의 재능기부 마을세무사를 활용하여 2019년 9월말 현재 3,116건의 상담활동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마을세무사 활동 실적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현재		
동	인원	상담수	동	인원	상담수	동	인원	상담수	동	인원	상담수
208	213	3,749	241	246	4,042	358	331	4,112	358	331	3,116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민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위촉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재능기부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를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면밀한 세무 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2020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1인당 1개 행정동 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적기 적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5개구 358개동 331명(2019년) → 25개구 424개동 424명(2020년)

「세무사법」

제6조(등록)

-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략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무국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한 마을세무사 자격요건의 완화로, 공익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의지가 있는 신규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마을세무사 인력 Pool의 확대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마을세무사 상담 유형을 보면, 전화 상담이 84.6%를 차지하는 등 대민 밀착 서비스의 활성화 및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상담 유형별 건수 등 실적 내역 >

구분	계	상담종류(건)			상담방법(건)			
		국세	지방세	국지방세	전화	방문	메일	팩스
계	11,270	10,493	285	492	9,534	1,650	71	15
2019.9월	3,116	2,831	87	198	2,657	440	17	2
2018년	4,112	3,885	90	137	3,529	560	21	2
2017년	4,042	3,777	108	157	3,348	650	33	11

- 불친절, 불성실, 전화 통화 불가, 이메일 상담 거부 등 마을세무사 자질이 의심되는 부적정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2015년도) 부터 현재까지 인력 추천을 ‘세무사고사회’에 의존함으로써 인력자원 공급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마을세무사 제도 전반에 걸친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재무국의 내실있는 운영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연도별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민원사항 접수 내역 및 조치결과 >

연도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2017	양도소득세 상담 차 전화하였으나 네이버에 물어보라는 등 불친절한 상담	정상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전화상 설명이 복잡한 세율구간(표)은 인터넷을 참고하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해당 세무사에 시민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더 신중한 상담을 촉구함	
2018	상담내용과 상담태도 불만으로 민원제기	상담과정에서 상담내용과 상담태도의 불성실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에 주의를 촉구함	
	양도소득세 문의관련 복잡한 양도세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 통화지연에 대한 민원제기	갖은 양도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양해와 양도소득세법 개정 및 국세 상담전화 지연은 국세청 소관으로 안내	
2019년	3곳의 마을세무사에게 문의전화하였는데 모두 외근중으로 불편을 겪음	당시 세무사들이 개정세법에 대한 교육참석과 강의로 부재중이었음을 안내하고 양해를 구함	
	상담을 위해 세무사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해당 세무사에 마을세무사는 이메일상담이 가능함을 주의 촉구	

- 또한, 현재 활동 중인 마을세무사 331명 중 활동실적이 전무한 마을세무사도 57명에 달하고 있는바, 활동 실적 없이 명함 기재용 경력으로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제3기('18~'19) 활동실적이 없는 마을세무사 > ('19.9월말 현재)

자치구	위촉위원	미실적 세무사	자치구	위촉위원	미실적 세무사	자치구	위촉위원	미실적 세무사
종로구	12	-	도봉구	8	1	영등포구	17	5
중 구	7	-	노원구	18	1	동작구	14	-
용산구	15	4	은평구	12	2	관악구	21	3
성동구	16	4	서대문구	13	1	서초구	7	1
광진구	9	1	마포구	15	2	강남구	12	2
동대문구	14	1	양천구	17	4	송파구	13	-
중랑구	4	-	강서구	20	2	강동구	18	10
성북구	15	5	구로구	15	1	계	331	57
강북구	9	5	금천구	10	2			

< 자치구별 마을세무사 활동실적 >

연번	자치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현재		
		동	인원	상담수	동	인원	상담수	동	인원	상담수	동	인원	상담수
	계	208	213	3,749	241	246	4,042	358	331	4,112	358	331	3,116
1	종로구	6	6	172	9	9	407	14	12	258	14	12	129
2	중 구	1	2	56	2	3	45	6	7	81	6	7	51
3	용산구	6	6	130	7	7	192	16	15	129	16	15	82
4	성동구	17	17	77	17	17	75	17	16	99	17	16	50
5	광진구	9	9	185	9	9	151	9	9	168	9	9	170
6	동대문	3	3	119	3	3	94	14	14	116	14	14	113
7	중랑구	4	4	69	4	4	72	6	4	43	6	4	46
8	성북구	20	20	125	20	20	54	20	15	104	20	15	39
9	강북구	10	10	75	10	10	36	13	9	42	13	9	38
10	도봉구	14	14	51	14	14	23	14	8	31	14	8	33
11	노원구	3	3	72	3	3	99	19	18	170	19	18	114
12	은평구	16	16	171	16	16	129	16	12	160	16	12	109
13	서대문	8	8	106	9	9	160	14	13	214	14	13	171
14	마포구	16	16	175	16	16	139	16	15	114	16	15	304
15	양천구	4	4	170	4	4	108	18	17	116	18	17	75
16	강서구	9	9	347	20	20	401	20	20	310	20	20	258
17	구로구	4	4	197	4	4	281	15	15	209	15	15	138
18	금천구	10	10	115	10	10	68	10	10	64	10	10	42
19	영등포	5	5	130	6	6	130	18	17	152	18	17	241
20	동작구	12	12	131	12	12	219	15	14	256	15	14	79
21	관악구	5	5	196	7	7	199	21	21	359	21	21	230
22	서초구	2	4	219	3	5	178	6	7	272	6	7	229
23	강남구	5	5	223	10	10	288	12	12	140	12	12	60
24	송파구	1	3	113	8	10	267	11	13	308	11	13	171
25	강동구	18	18	325	18	18	227	18	18	197	18	18	144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기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91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한기영 의원 (1명)

찬 성 자 : 강동길, 김상진, 김인호, 김태호,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정선,
이동현, 이현찬, 추승우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재능기부활동으로써, 현행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을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자격요건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로 완화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 중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개정함(안 제4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세무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u>3년 이상</u> <u>고 개업 중인 세무사</u> 중에서 필 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p> <p>② (생 략)</p>	<p>제4조(위촉 등) ① ----- ----- <u>세무사법</u> <u>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u> <u>세무사</u> ----- -----.</p> <p>② (현행과 같음)</p>